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03 발의연월일: 2021. 6. 21.

발 의 자: 김수흥・김진표・양정숙

양경숙 • 이원욱 • 김회재

윤준병·윤후덕·김철민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종가세를 유지하는 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율을 2021년 3월 1일 이후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세의 납세의무자들은 매 분기별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세율 조정 기준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1분기의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액산출 및 신고서작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21년 3월 1일"을 "2021년 4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생 략)	제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② 2021년 4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	
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	
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	
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	
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	
승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